

대전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26256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까지 합계 3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C은 피고에 대한 15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있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C에게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착오변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정금 청구).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1억 원 지급약정에 관하여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